

총회장(葬) 규정

제1조

총회 장(葬)은 증경총회장, 전 총회 총무 등 본 교단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이 별세하였을 때, 총회장, 서기, 총무의 결의에 따라 실시하며, 이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2조

총회 장(葬) 거행 시의 주례는 본 교단 총회장이 맡는다.

제3조

총회 장(葬)의 절차위원은 본 교단 총회장, 서기, 총무, 해당 노회장 및 해당 교회 대표로 구성한다.

제4조

장례위원은 증경총회장, 전 총회 총무, 총회 실행위원회 위원과 해당 노회 임원 및 해당 교회 당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

장례비용은 해당 교회 혹은 노회가 부담하며 총회는 조의를 표시한다.

제6조 (개정)

이 규정은 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